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서

- 정당 대표(시대전환) -

2021.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목 차

I. 제20기 자문위원 위촉 계획	1
II.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3
<붙임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현황	8
<붙임2>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서식	10



I 제20기 자문위원 위촉 계획

① 목적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남북 관계 발전을 선도할 참여형 평화통일 자문기구 구성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 및 평화공공 외교 활성화 주도

* 관련근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 제10조

② 자문위원 수 : 20,000명 이내 *제19기 19,000명

- 지역 대표 : 3,500명 내외
 - 광역·기초의회 의원, 교육의원
- 직능 대표 : 12,300명 내외
 - 경제·과학, 산업·통상, 건설·교통, 문화·체육, 정치·행정·법무, 교육, 외교·안보, 농림수산, 보건·복지, 환경·노동 10개 직능으로 분류
- 재외동포 대표 : 4,200명 내외
 - 재외동포사회 주요 인사 및 차세대 등

③ 자문위원 임기 : 2021. 9. 1. ~ 2023. 8. 31. (2년)



4] 자문위원 역할

- 민주평통의 기능 수행을 위해 다양한 평화통일활동을 전개
- 법정회의 참여 및 지역회의·협의회 사업 추진
 - 전체회의, 지역회의 참여 : 임기중 각 1회
 - 정기회의 참여 : 분기별 1회
 - 지역회의·협의회 평화통일활동사업 등
- 온라인 및 SNS 평화통일활동(온라인 통일정책건의, 통일여론조사)

5] 추진 일정

- 제20기 자문위원 위촉 기본계획 수립 (5. 18.)
-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의뢰 및 접수 (5. 20. ~ 6. 11.)
- 신원조사 및 후보자 선정 (6. 7. ~ 7. 16.)
- 제20기 자문위원 위촉 재가 (7. 30.)
- 간부위원 워크숍 및 신규위원 오리엔테이션 (8. 16. ~ 8. 31.)
- 제20기 출범 (9. 1.)



II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1 법적 근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제3호
 - 정당의 대표가 추천한 지도급 인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정당의 대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제3호의 인사를 추천

2 추천 대상

- 평화통일 논의 및 여론 수렴에 기여할 수 있는 직능분야 인사
- 통일에 관한 어젠다 개발, 정책건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사
- 기타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3 추천 인원

(단위 : 명)

정 당	배정인원	남	여	청년층 (만 45세 이하)
시대전환	2	1	1	1

* 배정기준 : 정당별 균등 배정 +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추가 배정

4 추천 기간 : 2021. 5. 20. ~ 6. 11.



5 추천 방법

- 추천기관은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 후보자를 선별하여 추천
- 자문위원을 추천할 때 **[붙임2]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서식 (P.10)**에 따라 △공문(시행문) △자문위원 후보자 명단(성명, 가, 나, 다 순), △후보자별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 공문 수신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중앙지역과장)

- 후보자별 서류는 원본을 아래의 서류 정리 순으로 종합

【자문위원 후보자별 서류 정리 방법】

후보자 신청서류를 ①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②신원진술서(약식, 앞/뒤쪽), 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약식), ④기본증명서(상세) 순으로 정렬하여,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스태이플러 사용 금지**

【후보자 서류 보내주실 곳(등기우편)】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중앙지역과 <제20기 자문위원 위촉 업무담당자>

- 추천 인사 중 사무처에서 지정한 여성층 40% 이상, 청년층(만 45세 이하) 30% 이상 반드시 준수·반영 요망

- 만 45세 이하 여성층 인사 추천 시, 여성·청년비율 동시 적용

* 만 45세 이하 기준 : 1975. 9. 2. 이후 출생자

-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시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P.5)을 참조하여 부적격 인사가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사무처에서 배정한 추천인원 보다 초과로 추천한 인원은 위촉 제외



- 추천기관에서는 등기우편 배달과정에서 분실에 대비하기 위해,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서류'를 복사하여 자체 보관

6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

- 현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가능
-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지역사회 물의 및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최근 5년 이내에 민주평통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관련으로 '해촉'된 인사
- 직계가족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 * 동일 단체, 회사 등에서 소속 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 신원조사 회보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상기 인사가 추천될 경우 위촉 대상자 선정 시 배제

7 후보자 추천 서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nuac.go.kr)에 접속하여 '제20기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1. 추천기관 작성 서류 : 제20기 자문위원 후보자 명단 **【별첨】**

2. 후보자 작성 서류(4종, 후보자별 작성 또는 발급)

①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서식1】**

② 경찰청 신원조사용 제출자료 3종

②-1 신원진술서(약식, 앞/뒤쪽) **【서식2】**

* 여권용 사진 1장 부착

②-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서식3】**

②-3 기본증명서(상세) **【서식4, 샘플】** 개별 발급<주민센터>

* 발급서류 원본 제출



- ※ 위의 후보자 서류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거나, △원본이 아니거나, △자필 서명이 빠져있는 경우 자문위원 위촉 배제



⑧ 후보자 추천 서류 작성방법

① 제20기 자문위원 후보자 명단 【별첨】 (추천기관 작성)

- 추천기관 담당자는 성명 가·나·다 순으로 후보자 명단 작성

② 제20기 자문위원 후보자 서류 (후보자별 작성 또는 발급)

1)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서식1】

- 자문위원 후보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희망협의회, 희망직능, 직종 등 기재사항을 항목별로 빠짐없이 작성
- 희망협의회 편성은 자택 주소지가 원칙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내용을 숙지한 후,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자문위원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에 대하여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하단의 **동의함에 체크하고 성명과 자필 서명(필수)**을 하도록 자문위원 후보자에게 안내

2) 신원진술서(약식, 앞/뒤쪽) 【서식2】

- 경찰청 신원조사용 서류로 내용이 부실하거나 다른 정보를 입력할 경우, 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이 취소 될 수 있음
- 자문위원 후보자의 성명(한글/한자)과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 상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상세) 상 등록기준지를 기재
- 자문위원 후보자의 사진은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여권용 사진(3.5cm×4.5cm) 또는 그 사진을 이미지화하여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사진 부착(해상도·선명도가 높은 사진)
- 학력, 경력 등에서 월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도만 기재
- 신원진술서는 앞쪽과 뒤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앞쪽 하단과 뒤쪽 하단에 **성명과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서식3】

- 경찰청 신원조사용 서류로 내용을 숙지하고 자필 서명(3곳)을 필수 작성

4) 기본증명서(상세) 【서식4, 샘플】 *발급서류 원본

- 발급 방법은 방문 발급(지역별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 경찰청 신원조사용 서류로 기본증명서(상세) 원본을 제출

※ **기본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기본증명서 : '상세'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 '전부 공개'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다른 증명서로 대체 불가 반드시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원본을 제출

※ **연락처 : 중앙지역과** (T. 02-2250-2277, F. 02-2236-2764)



붙임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현황

1 기 능

<설치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
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민주평통법」 제2조)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 혁

- '80.10.27.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헌법 제68조)
- '81.03.14.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 '81.06.05. :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출범
- '87.1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 변경(헌법 제92조)
- '88.02.2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
- '19.09.01. :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 2021. 09. 01.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예정)



3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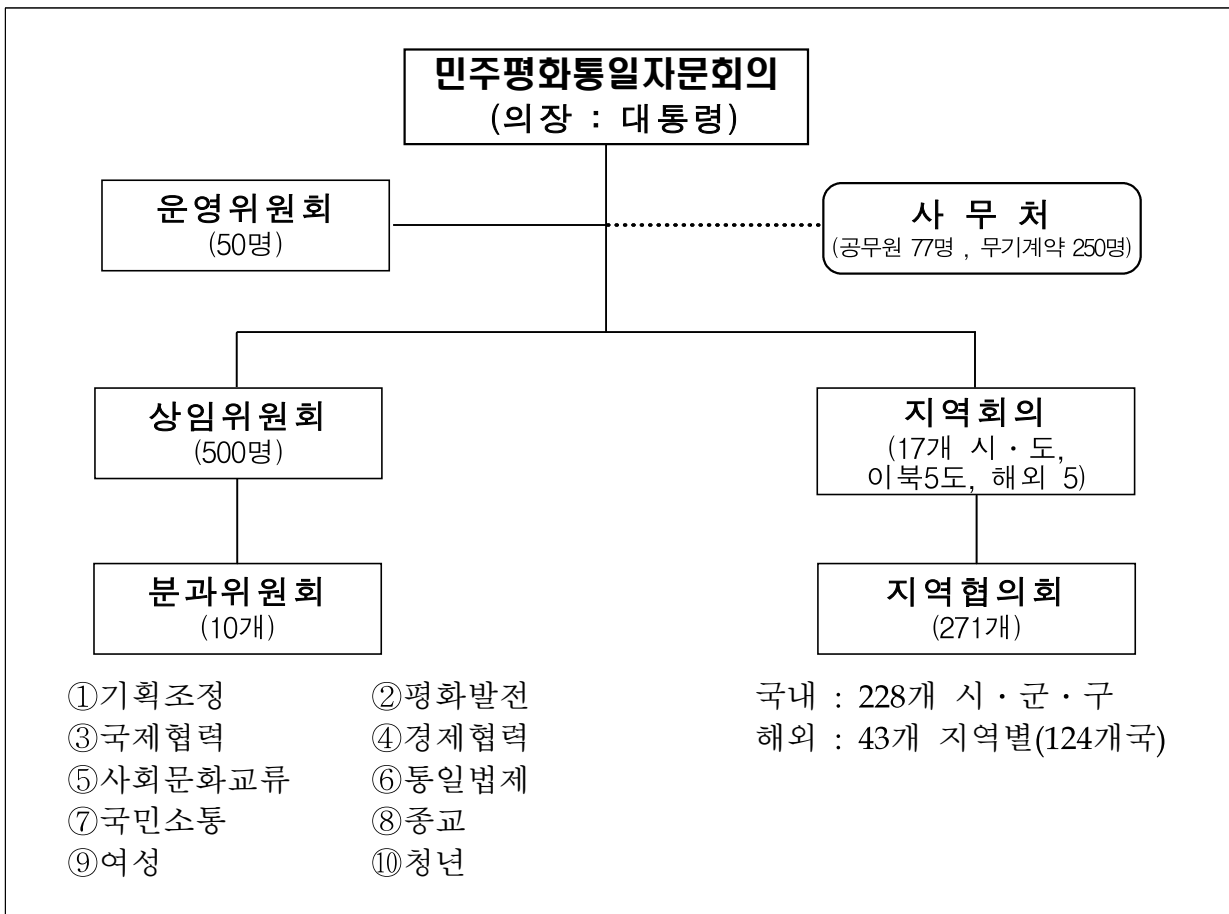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19기 자문위원 현황 : 19,000명

- 국내 : 15,400명(직능대표 12,282명, 지역대표 3,118명)
 - * 17개 시·도 및 이북5도 지역회의, 228개 시·군·구 지역협의회
- 해외 : 3,600명(124개국 재외동포대표)
 - * 5개 지역회의(일본, 중국, 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 43개 지역협의회

<조직도>





붙임2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서식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nuac.go.kr)에 접속하여 '제20기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1. 추천기관 작성 서류 : 제20기 자문위원 후보자 명단 **【별첨】**

2. 후보자 작성 서류(4종, 후보자별 작성 또는 발급)

①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서식1】**

② 경찰청 신원조사용 제출자료 3종

②-1 신원진술서(약식, 앞/뒤쪽) **【서식2】**

* 여권용 사진 1장 부착

②-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서식3】**

②-3 기본증명서(상세) **【서식4, 샘플】** 개별 발급<주민센터>

* 발급서류 원본 제출

*** 후보자 서류 편철 순서 및 방법**

- 후보자 신청서류를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신원진술서(약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기본증명서(상세) 순으로 정렬하고,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위의 추천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이 빠져있는 경우, 자문위원 위촉 심사 배제되며, 제출된 서류는 별도로 반환되지 않음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우편물 보내주실 곳】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중앙지역과<제20기 자문위원 위촉 업무담당자>



【별첨】 *추천기관 작성 (성명 가, 나, 다 순)

제20기 자문위원 후보자 명단

[추천기관명 :]

연번	성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1		21		41	
2		22		42	
3		23		43	
4		24		44	
5		25		45	
6		26		46	
7		27		47	
8		28		48	
9		29		49	
10		30		40	
11		31		51	
12		32		52	
13		33		53	
14		34		54	
15		35		55	
16		36		56	
17		37		57	
18		38		58	
19		39		59	
20		40		60	



【서식 1】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성명	한글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실제생일		양 <input type="checkbox"/> 음 <input type="checkbox"/>
주소 (*도로명주소)	집	(우)					
	직장	(우)					
	활동희망 시·군·구 협의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주소 기준 <input type="checkbox"/> 직장주소 기준	우편물 받을 주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 <input type="checkbox"/> 직장	연락처 (010) ()
추천기관		추천단체		추천연번			
희망 직능	(숫자로 표기)	1. 경제·과학 2. 산업·통상 3. 건설·교통 4. 문화·체육 5. 정치·행정·법무 6. 교육 7. 외교·안보 8. 농림수산 9. 보건·복지 10. 환경·노동					
직종 (직업분류)	(숫자로 표기)	1. 농·임·어·광업 2. 제조 3. 건설·시설·환경 4. 숙박음식개인서비스 5. 유통·관광·운수 6. 협회·시민사회단체 7. 연구·대학교수 8. 보건의료 9. 언론방송정보통신 10. 학원·교육 11. 보험·부동산·금융 12. 정당 13. 법조 14. 종교 15. 주부 16. 기타					
1. 본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2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 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직무수행에 불성실할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위촉이 해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자문위원 위촉해제 사유 ○ 자문위원 위촉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 직무수행이 불성실할 때 -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경우 ○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자문위원 직을 이용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							
3.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1~3의 내용에 대한 동의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식 2】 <별지 제21호서식>

신 원 진 술 서(약식)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진] *사진파일 가능 (3cm×4cm)·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직위)			연 락 처	직장전화 :			
	소재지 :				휴 대 폰 : E-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경 력	기 관 · 업 체 및 정 당 · 사 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직 급)	상 별 관 계 (일자)			
		. . ~ . .						
		. . ~ . .						
		. . ~ . .						
		. . ~ . .						
해 외 거 주 사 실	거 주 국 가	기 간		거 주 목 적	동 반 가 족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 종 계 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子				
				子				
<p>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작성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정당·사회단체 경력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자필서명)

■ 본인 동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서명)	(자필서명)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서식 4, 샘플】 : 「기본증명서(상세)」 (*기관 발급)

■ 기본증명서(상세) 발급방법 (*기관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 요청)

- 방문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발급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따라하기' 검색

■ 유의사항

- '기본증명서(상세)'(O), '기본증명서(일반)'(X)
- 기본증명서 원본(O), 사본(X)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표시(O), 주민등록번호 일부 표시(X)

■ 기본증명서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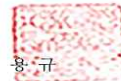
기 본 증 명 서 (상 세)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000번지				
구 분	상 세 내 용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인] 2008년 01월 01일 [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홍길동(洪吉同)	1955년 1월 1일	550101-1234567	남	金海
일반등록사항					
구 분	상 세 내 용				
출생	[출생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000번지 [신고일] 1955년 1월 5일 [신고인] 부				

위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4월 0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임용규



발급시각 : 16시 51분
발급담당자 : 문철수
☎ : 031-000-0000
신청인 : 홍길동



087168S01209061007F0300SA27113

1 / 1



참고자료

자문위원 후보자 제출서류 작성 방법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

<p>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p>	<p>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여권용 사진(3.5cm×4.5cm), 주소(등록기준지, 자택, 실거주지, 사무실), 휴대폰 번호, 전화 번호(사무실), 팩스번호, 이메일(E-mail) 주소, 직업, 학력사항, 경력사항, 가족 이름, 가족 생년월일, 해외 거주사실, 병력(미필여부, 군별, 기간, 병과, 최종계급) 등</p>
<p>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p>	<p>제공하신 정보는 자문위원 위촉심사 관련 정보 제공, 범죄경력 조회, 지원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p> <p>① 본인 확인 및 신원조사에 이용 ② 후보자와의 연락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③ 위촉심사 평가자료 이용 ④ 후보자 자료 검증 ⑤ 대외기관(국회 등) 자료 요구 시 최소 범위 내에서 제출</p> <p>*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p>
<p>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p>	<p>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준영구이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p>
<p>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p>	<p>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는 제출하신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의 서명·날인으로 같음합니다.



<작성예시> ②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성명	한글	홍길동		성별	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실제생일	850101	양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소 (*도로명주소)	집	(우) 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장충동 2가 209)						
	직장	(우) 0123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84(세종동 2가 209)						
	활동희망 시·군·구 협의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집주소 기준 <input type="checkbox"/> 직장주소 기준	우편물 받을 주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집 <input type="checkbox"/> 직장	연락처	(010)1234-5678 ()			
추천기관				추천단체			추천연번		
희망직능	(숫자로 표기) 1	1. 경제·과학 2. 산업·통상 3. 건설·교통 4. 문화·체육 5. 정치·행정·법무 6. 교육 7. 외교·안보 8. 농림수산 9. 보건·복지 10. 환경·노동							
직종 (직업분류)	(숫자로 표기) 1	1. 농·임·어·광업 2. 제조 3. 건설·시설·환경 4. 숙박음식개인서비스 5. 유통·관광·운수 6. 협회·시민사회단체 7. 연구·대학교수 8. 보건의료 9. 언론방송정보통신 10. 학원·교육 11. 보험·부동산·금융 12. 정당 13. 법조 14. 종교 15. 주부 16. 기타							
1. 본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2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 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직무수행에 불성실할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위촉이 해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자문위원 위촉해제 사유 ○ 자문위원 위촉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 직무수행이 불성실할 때 -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경우 ○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자문위원 직을 이용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									
3.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1~3의 내용에 대한 동의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021년 00월 00일									
작성자		성명 홍길동 (인 또는 서명) 홍길동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작성 방법

※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의 해당사항을 한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활용에도 동의하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주민등록 성명 기재), 실제 생일을 정확히 기재
 - 자택 주소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도로명 주소로 기재
 - 주소는 자문위원 위촉서류 발송에 필요하오니 정확하게 기재
 - 지역협의회는 자택 주소(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배정
- ※ 다만, 직장 주소로 지역협의회 배정을 희망할 경우, '직장주소'에 '☑' 표기

- 근무직종은 직업분류에 필요한 사항으로 아래 항목 중 가장 근접한 직종을 '직종'란에 숫자로 표기

【 직종분류 】

- | | | | |
|---------------|--------------|---------------|--------------|
| 1. 농·임·어·광업 | 2. 제조 | 3. 건설·시설·환경 | 4. 숙박음식개인서비스 |
| 5. 유통·관광·운수 | 6. 협회·시민사회단체 | 7. 연구·대학교수 | 8. 보건의료 |
| 9. 언론·방송·정보통신 | 10. 학원·교육 | 11. 보험·부동산·금융 | 12. 정당 |
| 13. 법조 | 14. 종교 | 15. 주부 | 16. 기타 |

- 희망직능 기재 : 직업과 경력사항을 고려하여 아래 해당직능 중 1개 분야 선택

【 직능분류 】

직 능	내 용	직 능	내 용
1. 경제·과학	금융, 회계, 보험, 서비스업, 숙박, 요 식업 등, 정보통신, IT, 과학 분야	6. 교육	교사, 교수, 학원, 학교육 등 관련 분야
2. 산업·통상	무역, 투자, 에너지(전력, 가스 등), 제조 분야	7. 외교·안보	외교, 군인, 통일단체, 국제관 계 분야
3. 건설·교통	건설, 부동산, 시설, 유통, 운수	8. 농림수산	농림·축산·어업·산림 분야
4. 문화·체육	문화, 체육, 관광, 종교 분야	9. 보건·복지	병원·요양원·복지시설·요원, 의사, 간호사, 약사, 식품·영양
5. 정치·행정·법무	정당, 행정, 경찰, 경호, 소방, 변호사, 법무사 등 시민단체 분야	10. 환경·노동	노사 분쟁, 인권, 환경 분야

- 「자문위원 후보자카드 및 활동 동의서」 하단의 작성 월, 일 및 자필 서명 (날인)을 필히 기재



③ 신원진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원진술서 양식의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신원조사용 서류로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시면 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성명(한자),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를 기재
- 자택 주소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재
-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신원 진술서」 앞쪽 1곳, 「신원 진술서」 뒤쪽(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곳,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곳에 반드시 성명 기재 및 자필 서명
- 신원진술서 하단의 작성 년 월 일을 필히 기재
- 본인사진 :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여권용 사진(3.5cm×4.5cm) 1장을 부착하거나 같은 규격의 이미지 파일(JPG파일)을 첨부하여 출력한 서류를 제출

※ 사진부착방법(예시)

1. 사진관에서 인화한 여권용 컬러사진을 신원진술서에 부착(권장 사항)

★ 향후 자문위원증 제작 시 부착한 여권용 컬러사진을 스캔하여 활용할 예정

2.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여권 사진 규격의 이미지 파일 사진을 신원진술서에 부착

3. 여권 사진 규격의 이미지 파일을 신원진술서 파일에 첨부해서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뒤 제출

* 부득이한 경우 2번, 3번으로도 제출 가능하나, 향후 자문위원증 제작을 위하여 사진 파일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